

---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

2018. 3.



행정안전부

# ■ ■ 목 차 ■ ■

I.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기구 현황 .....	1
II. 2018년도 지방조직 관리 방향 .....	2
III. 조직 자율성 확대 관련 제도개선 사항 .....	3
IV. 주민 밀착형 지방조직 설계 .....	7
1. 주민 접점 현장 중심 지방공무원 배치 .....	7
2. 자치단체 기능 및 인력의 재배치·효율화 .....	9
V. 자율과 책임 기반 지방조직 혁신 .....	10
1. 2018년도 조직 분석·진단 추진 .....	10
2. 조직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조직 운영 .....	13
VI. 자치단체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	14
1. 한시기구 운영 성과평가 강화 .....	14
2. 결원보충 운영 합리화 .....	15
3.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	16
4. 전문임기제 운영 내실화 .....	17
VII. 추진 일정 .....	18

# I.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기구 현황

□ **정원** : 총 310,691명 ('17.6월 현재)

- (총괄) 구조조정\* 등 총정원을 긴축 관리해왔으나, '09년 이후 복지, 소방 인력 증가로 지속 확대('07.12월 대비 10.1% ↑)

\* '98년 구조조정 시 48,876명 감축, '08년 구조조정 시 7,605명 감축



- (기능별) 보건복지 17.9%, 소방·방재 17.1%, 행정지원 26.1%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주택 지역개발	소방방재 민방위	산업경제	환경	행정지원	기타
6.1%	17.9%	12.1%	17.1%	12.8%	4.1%	26.1%	3.9%

- (계층별) 시도 비율은 확대, 시군구 비율은 감소(읍면동 소폭 확대)

시도 비율
('07) 28% → ('17) 30.2%

시군구 비율
('07) 55% → ('17) 52.6%

읍면동 비율
('07) 17% → ('17) 17.2%

## □ 기 구

- 대통령령에 기준이 규정된 기구(실·국 등) 수는 유사 수준 유지, 자치단체 자율 설치 가능한 기구(과) 수는 지속 증가

※ (시·도 사례) '07년 대비 정원의 경우 20.4% 증가하였으나(79,220명→95,350명), 자율 설치가 가능한 '과'의 경우 47.8% 증가(시·도별 평균 46개→68개)

## Ⅱ. 2018년도 지방조직 관리 방향

목표

“현장 중심 지방조직으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구현”

추진  
방향

- ▶ 주민서비스 제고와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조직설계
- ▶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에 기반한 지방조직 혁신
- ▶ 원칙과 성과 중심의 지방조직 효율성 제고

세부  
추진  
과제

구 분	주요 내용
주민 밀착형 조직설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 접점 현장 중심 지방공무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 기반 인력관리</li> <li>② 자치단체 인력 사후관리 강화</li> </ul> </li> <li>2. 자치단체 기능 및 인력의 재배치·효율화</li> </ol>
자율과 책임 기반 지방조직 혁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8년도 조직 분석·진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체적 조직·정원 분석 실시</li> <li>② 자치단체 조직 분석·진단 지원</li> <li>③ 신규 충원인력 특정·정밀진단 실시</li> <li>④ 수시 진단제도 운영 활성화</li> </ul> </li> <li>2. 조직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조직 운영</li> </ol>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시기구 운영 성과평가 강화</li> <li>2. 결원보충 운영 합리화</li> <li>3.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제고</li> <li>4. 전문임기제 운영 내실화</li> </ol>

## Ⅲ. 조직 자율성 확대 관련 제도개선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18.2월)

### 1 추진 배경

-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 기준인건비 등 조직 관리·운영상의 자율성 확대
- 자치단체별 행·재정 여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구 확대, 직급 상향조정 등 맞춤형 지방 조직제도 개선 도모

### 2 개정 내용

#### 1. 자치단체 정원관리 자율화

- 기준인건비 한도(+자율범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초과분에 대해 부여되던 페널티(감액) 삭제\*
  - 다만, 인건비 절감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유지
- 보통교부세 페널티 미적용은 2018년도 인건비 결산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폐지(영 §4②)
- 다만 적정 인력의 기준으로서 기준인건비는 계속 산정·통보되므로,
  - 주민서비스 강화·현장인력 충원 등 자치단체 업무 수행 시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기초수요액 반영\*도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에 한정

\* 「지방교부세법」 §7 및 같은 법 시행령 §5

- 정원관리 자율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의 해당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영 §40①)

## 2. 자치단체 과 설치 자율화

-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실·과·담당관 설치기준(9~18개) 삭제,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과 설치 자율화(영 별표3)
  - 단, 자율화에 따른 과 증설 시에도 영 제5조 및 제6조제4항의 기구설치 요건(정원, 업무량, 독자성, 계속성 등) 준수 필요
  -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대상도 '5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조정(영§21)
    - ※ 이미 설치된 5급 한시기구의 경우 종전 결정된 존속기한을 유지하며, 존속 기한 종료 시 해당 자치단체에서 상시화 여부 등 적정성 검토
-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부단체장 통솔범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실·국 설치기준(1~3개) 신설(영 별표3)
  - 종전 개정령(대통령령 제27713호, '17.1.1.)에서 기구 설치범위 내 행정 수요 변화율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행정기구 수를 조정(영 별표3 제1호)하도록 한 점을 감안, 금번 개정에 따른 실·국 설치의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개 이하로 설치
  - 필요시 실·국 설치 대신, 종전과 같이 설치범위(2개) 내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읍장을 4·5급으로 임명 가능(영 별표3 제2호 비고 제1호)

※ 금번 개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실·국 증설 가능여부 산정결과는 2018년말 통보 예정이며, 2017년말 10만 미만 시·군에 기 통보('17.12.29.)된 산정결과는 개정 전 기준으로 '과 1개 증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해당 통보결과를 통해 실·국을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불가

### 3.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직급기준 탄력성 확대

- 본청 실·국장 직위 중 3·4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2명에서 3명(인구 120만 이상 시는 4명)으로 확대(영 별표3 제2호 비고제6호)
    - 통합 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해당 3·4급 실·국장 직위를 일반구 구청장 직위로 대체 임명 가능(영 별표3 제2호 비고제8호)
  - 주요 직위 과장·담당관 4·5급 임명 가능(영 별표3 제2호 비고제9호)
    - 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본청 감사업무 수행 과장·담당관 직위를 4·5급으로 임명 가능
    -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과장·담당관 직위\*를 2명(인구 120만 이상 시는 3명)의 범위에서 4·5급으로 임명 가능
- \* 기획,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주요 국정과제 관련 업무 수행 등 타 부서에 비해 업무 중요도가 높거나 업무량이 상시적으로 많은 부서로, (부)단체장 직속 또는 실·국 소속 선임부서로 설치된 부서

#### 【 주요 직위 과장 직급조정 협의기준 】

- ❖ 협의시기 : 연중 상시
- ❖ 제출내용 : 협의대상 부서 현황(정원, 업무분장, 연혁 등), 직급조정 필요성, 부서 현안사항, 타 부서 대비 중요도·업무량 비교 등

### 4.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직 개선

-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지방자치법 §7②1호)의 실·국 설치기준을 종전 1~3개에서 2~4개로 확대(영 별표3 제1호)
    - 종전 개정령(대통령령 제27713호, '17.1.1. 시행)에서 기구 설치범위 내 행정수요 변화율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행정기구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감안, 금번 개정령에 따른 실·국 설치의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3개 이하로 설치
- \* 단, 영 별표3 제1호 비고제1호에 따른 통보결과('16.12.30.)에 따라 실·국을 이미 증설(종전 3개)하였거나 증설이 가능('17.12.29. 통보)한 경우 4개 이하로 설치가능

- 인구 7만 이상 읍이 읍장을 4급으로 임명할 경우, 2명의 범위 내에서 과장을 5급으로 임명 가능(영 별표3 제2호 비고제3호 등)
  - 5급 과장을 두는 경우, 부읍장·부면장은 5급 과장 중 1명이 해당 직위를 겸하도록 함(영 별표3 제2호 비고제4호 등)
    - ※ 세종특별자치시(영 별표2) 및 제주특별자치도(영 별표7) 동일 개정사항

## 5. 기타 개정사항

- 시·도 지역본부 설치 시 기구기준 명확화(영 별표1 제6호)
  - 시·도 본청의 실·국·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경우, 실·국·본부 수에 포함하여 산정함을 명시
- 시·도 실·국장 직급기준 상향을 위한 기구 감축운영 기준 개선 (영 별표2 제1호 비고제4호)
  - 별표1에 따라 이미 설치된 실·국·본부 외에도 설치 가능한\* 기구를 사전 감축하여 직급 상향(2·3급)할 수 있도록 개선
    - \* 영 별표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기구 증설이 가능하나, 실제로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
- 기구설치기준의 인구산정 기준 명확화(영 §7③)
  - 종전 영에서 기구감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부족분 기준에서 충족분 기준으로 변경(‘100분의10 이상을 미달’→ ‘100분의90에 미달’)
    - ※ 해석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단순 문구 수정으로, 기준·대상은 개정 전과 동일
- 각종 직급기준의 인구산정 시점 기준
  - 별도 명시 또는 통보된 사항이 없는 경우, 영§7의 기구설치기준 인구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전년도말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적용



## IV. 주민 밀착형 지방조직 설계

### 1 주민 접점 현장 중심 지방공무원 배치

#### 1.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 기반 인력관리

##### □ 추진 개요

-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했던 종전 관리방식에서 나아가, 조직 운영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인력·조직관리  
\* 예시 : 국·과 설치수, 과 단위 평균정원, 상위직 비율, 별도정원 비율
- 기존 인력 운용의 성과를 핵심지표 분석·공개로 평가하고,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제를 도입

	핵심지표 공개	신규인력 성과평가
적용대상	전체 자치단체	개별 자치단체
성과지표	3개 분야 10대 지표	자치단체별 3개 지표
활용	매년 지표 평가결과 공개, 지역별 서비스편차 완화 도모	신규인력 협의 시 성과협약 체결, 추후 성과평가 시행

##### □ 세부 추진방안

- (핵심지표 공개) 주민 삶과 직결된 소방·복지·생활안전 3대 분야 10개 지표 발굴·선정(상반기 중 확정), 매년 지표 산출 및 언론공개  
- 현장·주민 서비스 중심으로 인력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도모
- (신규인력 성과평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자치단체별로 성과지표 (1~3개)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제시하는 성과협약 체결(9월~)  
- 추후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기준인건비 협의 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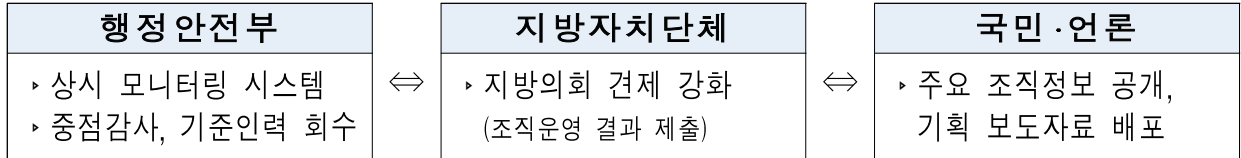
##### ※ 분야별 성과지표 예시

- ▶ (노인) 노인요양시설 우수등급 개수, 독거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수
- ▶ (도시재생) 안심 주거공간 조성률, 20년 이상 주택 노후도
- ▶ (지역경제) 소상공인 임대차 관련 상담건수, 전통시장 청년 유입률

## 2. 지방자치단체 인력 사후관리 강화

### □ 추진 개요

- 자치단체 인력 운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의회·언론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효율화 노력 도모



### □ 세부 추진방안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월별로 정원조례 반영 여부 조사 실시, 연말 기준 미배치 인력은 기준인력 회수 조치 확행

※ 소방인력도 기준인력 회수 조치 대상에 포함

- (중점감사 시행) 자치단체 감사 시 현장, 주민서비스 중심의 인력 배치 등 인력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 (지방의회 견제 강화)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매년 12월)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관리 유도

※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에 반영하여 의회 제출의무 제도화(2.20.)

❖ (의회 제출사항)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 (비교·공개 확대) 공개 대상 조직정보(현재 5개\*) 확대, 비효율적 인력 관리 자치단체, 우수 사례 등에 대해 언론 공개 등 강화

\* 과장급 이상 직위 비율, 공무원 정원,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운영 현황, 현장공무원(사업소, 읍면동) 비율

## 2

# 자치단체 기능 및 인력의 재배치·효율화

### □ 추진 개요

- 업무 효율화를 통해 기능 쇠퇴 분야 등 인력을 감축하고, 주민접점 현장과 지역현안 분야로 재배치해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

### □ 세부 추진방안

- (재배치 목표) 향후 5년간 신규인력 충원 규모를 반영해 자치단체별 정원의 1~3%를 재배치 대상으로 하되, ※ 국가는 매년 1% 적용
  - 행정수요·기능, 인력운용 여건 등을 감안해 목표치 조정
- (추진 절차) 행정안전부 협의(시군구는 시도 협의)를 거쳐 자치단체별 목표치 산정, 자체 진단 결과를 반영해 재배치 시행



- (재배치 방안) 기능 쇠퇴·감소 분야, IT 도입 등 업무 효율화로 인한 인력 절감 분야 등에서 인력 감축분 발굴 후,
  - 안전·복지 등 현장 서비스 확충, 치매 관리·방문 보건 등 주요 국정과제 분야, 지역현안 등 신규 소요 분야로 인력 재배치

#### 【 재배치 기준 예시 】

- ① (기능) 지원기능,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으로 재배치  
\* 예시 : 도시개발·산단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국제행사 등 지역현안 분야,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
- ② (현장) 본청 또는 감독부서에서 **읍면동, 일선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 ③ (서비스 편차) 인력 부족으로 안전·복지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현업부서 또는 읍면동**으로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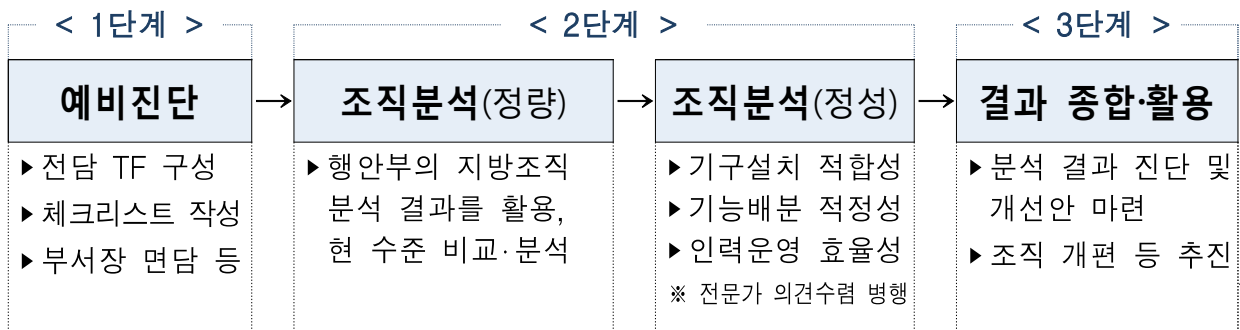
- (후속 조치) 기준인력 증원(수시증원 포함) 검토 시 재배치 성과 반영
  - 재배치 우수 자치단체의 경우 수시증원 등 인력협의 시 우대

## V. 자율과 책임 기반 지방조직 혁신

### 1 2018년도 조직 분석·진단 추진

#### 1. 자체적 조직·정원 분석 실시 (연 1회)

- (개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지방조직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자율적 조직 분석·진단 실시 및 추진체계 구축
  - 자치단체 전담 TF(반장:기조실장) 및 조직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내용) 기구설치 적합성, 기능배분 적정성, 인력운영 효율성 등
  - 기능·인력 재배치, 정원 조정, 기구 통·폐합 등 조직구조 개선



#### 2. 자치단체 조직 분석·진단 지원 ※ 4월중 분석결과 및 매뉴얼 배포

- (조직분석) 자치단체의 현 수준과 유사 자치단체 간 비교·평가를 위한 기구설치 및 인력운영 분석결과 제공
- (매뉴얼) 진단지표, 비교 자치단체 현행화 등 매뉴얼을 정비, '18년도 「자치단체 자체 조직 분석·진단 매뉴얼」 배포
- (자문) 지방행정연구원(지방혁신지원센터)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조직혁신자문위원회' 등 전문기술 자문 연계 지원

### 3. 신규 충원인력 특정·정밀진단 실시 ※ 세부 추진방안 4월 중 별송

#### □ 추진 개요

- 인력이 신규 충원된 주요 분야에 대해 조직, 인사, 일하는 방식 등 정밀 종합진단을 실시해 충원에 따른 서비스 질 개선 도모

#### □ 세부 추진방안

- (진단 대상) 최근 3년 이내 신규인력이 충원된 소방·사회복지 등 5개 분야를 선정, 분야별 5~6개 자치단체에 대해 정밀진단 실시
- (진단 내용) 조직, 인사 및 일하는 방식을 포함한 종합적 분석·진단

#### 【 분야별 주요 진단사항 】

- ❖ (조직) 효율적 인력배치, 기능 대비 적정인력, 기구 설계의 적정성 등
- ❖ (인사) 직무 유형별 맞춤형 역량강화 방안, 인사상의 인센티브 등 인사 운영방안, 채용 인력 부족 등 인사상의 애로 및 사기진작 방안 등
- ❖ (일하는 방식) 업무수행 방식 개선, 소통 및 협업 증진방안 등

- (진단 체계)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 전담 실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혁신자문위원회」에서 자문 수행
  -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진단, 필요 시 제도개선 방안 등 마련

자치단체	지방행정연구원	혁신자문위원회	행안부·관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점 발굴</li> <li>▶ 자체 개선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 및 분석 수행</li> <li>▶ 개선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 및 컨설팅</li> <li>▶ 소규모 연구용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 총괄·기획</li> <li>▶ (부처) 제도 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li> </ul>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와 지방인사제도와 협업 추진

- (진단 방식) 정량진단 외에 재직자 면담 등 정성진단, 현장 중심형 진단으로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맞춤형으로 실시
- (후속 조치) 기구·인력 협의 시 반영, 제도 개선 필요사항 정비, 유형별 우수모델 발굴·확산(포상 등 병행)

## 4. 수시 진단제도 운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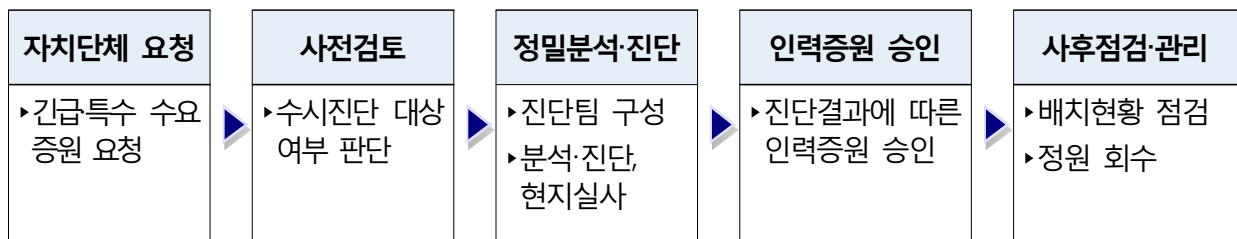
### □ 추진 개요

- 연도 중에 발생한 긴급하고 특수한 행정수요에 맞는 탄력적 조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의 인력증원 요청 수시검토 및 반영

### □ 세부 추진방안

- (대상) 긴급·특수한 행정수요\* 발생으로 시급한 증원이 필요한 경우
  - \* (예시) 대규모 인구유입 및 사업체 입주(각종 민원, 제반시설 조성), 재해·재난(피해복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수요(생활안전 인력) 등
- (시기) 2~3분기 중, 자치단체별 연 1회 요청 가능
- (추진 주체) 수시진단팀\* 구성·운영 / (기간) 2주 내외
  -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조직혁신자문위원회
- (내용) 업무량·기존인력 재배치 가능성 등 분석 후 시급성·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진단·분석
  - 정량·정성분석 및 현지실사 병행, 인력증원 여부 등 판단

#### 【 수시진단 추진절차 】



- (인력증원) 증원 필요성 인정 시 즉시 증원 추진, 다음해 기준 인건비 산정 시 수시 증원분 반영
- (관리) 인력 배치현황 점검, 미배치 정원 회수 등 지속적 점검 실시

### □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 준수

- (기구 수)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된 실·국 및 범위 내에서 기구 설치 및 운영, 기준 초과 시 즉시 시정 조치
  -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4급 이상 등 고위직 정원은 법령상 기준과 합치되도록 조직 운영
- (기구 설치) 국은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 과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
  - 과는 4개 담당 단위(시도 5급, 시군구 6급) 이상의 정원 및 업무량 필요
  - 실·국·본부 하부조직의 통솔범위 간 균형 유지

### □ 조직 및 정원관리 감사 실시

- (시기) 연 1회(하반기) / (대상) 5개 시·도(관할 시군구 포함)
- (감사내용) 조직관계 법령·지침 준수 여부, 기준인건비 적정 운영 여부 등 최근 3년간 조직운영 현황 및 정원관리 실태 점검

#### 【 '16~'17년 주요 지적사례 】

- ❖ (법령 위반) 부적합한 한시기구 협의·운영, 본청기능을 사업소로 편법 신설·운영, 기구 통솔범위 및 정원규모 불균형, 직제규정에 없는 임시조직(TF) 상시 운영 등
- ❖ (기준인건비 운영 부적정)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소요인력 증원분 기준인건비 미활용, 행정직 복지 분야 재배치실적 허위 제출 등
- ❖ (기타) 불필요한 위원회 존치, 상시적 결원보충, 무기계약 전환자 관리 부적절 등

- (감사결과 통보·처리) 감사결과 통보(행정안전부, 감사종료 후 70일 이내) → 감사결과 이행 조치(지자체, 60일 이내) → 적정성 확인(행정안전부)
- (결과 조치) 감사결과 이행 조치에 대한 지속 점검 및 이행 독려

## VI. 자치단체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 1 한시기구 운영 성과평가 강화

#### □ 기본 방향

- 한시기구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기구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신설·연장 여부 결정

#### □ 성과평가 방안

- (기간)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 또는 폐지 여부 결정
- (대상) 시도 3급 이상 및 시군구 4급 이상 한시기구
  - '18.1월 이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협의 요청 시부터 적용
  - ※ 성과평가 주체 :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 (절차) 한시기구의 성과목표 설정(지자체) →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검토(행정안전부) → 연장 또는 폐지 여부 결정(행정안전부)
  - 존속기한 완료 3개월 전 실시, 서면 및 현장방문 병행
- (평가항목) 기구 운영 현황, 업무량, 목표 달성 여부, 향후 전망 등
  - ① 계획된 바와 같이 기구가 제대로 설치·운영되었는지 여부
  - ② 기존 기구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정도의 업무량 발생 여부
  - ③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정성·정량 평가 포함)
  - ④ 사업 추진 일정, 향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 평가

#### 【 한시기구 신설 시 직급협의 기준 】

- ❖ (기간) 1년 단위 협의, 사업특성 및 성과창출 기간 등에 따라 필요시 3년까지 협의
- ❖ (기능) 상시적 기능, 상시기구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량인 경우 협의 불가
  -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시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협의 시, 초기 사업 설계를 위한 단기간 기구 운영 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수행
- ❖ (기타) 직급 협의 후 기능, 과 구성, 명칭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



## □ 기본 방향

- 기관 간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지원이 필요한 분야(직위)에 한정하며, 파견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
- 파견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낮은 자치단체의 반복적인 결원보충 또는 승진적체 해소 등 목적에 어긋나는 결원보충 불가

### 【 결원보충 승인 검토요건 】

- ❖ (대 상) 1년 이상 파견자
  - ※ 직위를 갖지 아니하거나 초과현원인 경우,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 (기 간) 5년 이내 (최초 2년 이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절 차) 사전협의(승인) → 파견 → 신청 및 결원보충(승인)

## □ 운용상 유의사항

- (협의절차 준수) 파견예정 직위에 대한 결원보충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 준수
  - ※ 선 파견 후 사전협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 제외
- (인사요건 구비) 해당 직급에 인사 대기자(조직개편 등) 또는 초과현원이 존재하는 경우 결원보충 협의 대상에서 제외
  - ※ 사전협의 시 협의 기관에 파견자 직위 및 원 소속기관 현원 현황 제출
- (기간연장 지양) 임의적인 조기복귀 등 파견자 교체\*에 따른 재협의 시 당초 결원보충 인정기간 연장 지양
  - \* 불가피한 개인사정(질병 등) 등을 제외한 단순 기관 판단에 따른 파견자 교체 등
- (자치단체 조합) 최초 조합 승인 시 인정받은 정원 범위 이내라도 파견자의 승인직위 임의변경 금지(변경 시 사전협의 필요)

## □ 기본 방향

-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운영방안 마련

## □ 추진 방안

- (정비)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 자체 검토 후 정리 또는 활성화
    - 실효성·안전 특성 등에 따라 폐지,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등 조치
    -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 마련
- \* 다만, 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통합 운영 불가 (예: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설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소관 부처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임의화 : 최근 3년간 미개최 또는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4.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조례)
5.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6. 비상설화 : 안전 발생의 빈도가 적은 경우

- (설치) 신규 위원회 설치 지양, 통합·분과위원회 등 운영방안 강구
  - 한시 운영이 가능한 경우 존속기한 명시, 목적 달성 시 자동 폐지
- (운영)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 등 관련법령 준수
  - 위촉직 위원의 경우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양성평등기본법)하고, 자문위원회의 법령·조례상 기능 및 권한 준수 철저

## □ 정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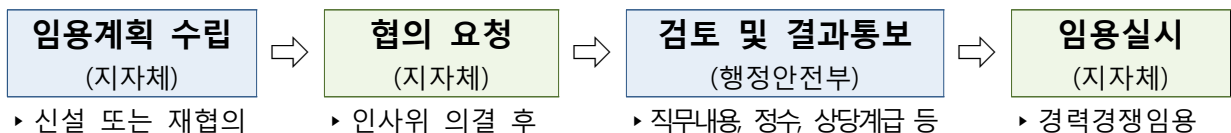
- ① (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 계획 제출 : ~2월
- ② (행정안전부 → 소관부처)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요청 : ~3월
- ③ (자치단체·행정안전부)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및 점검 : ~6월

## □ 조직 관리

- (기구) 조직관리 안정성을 위해 단체장 및 실·국장 보좌기관에 한정, 보조기관(실국장) 직위 불가 ※ (근거)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제31조의2
- (정원) 정원 외로 운영하되, 예산 범위(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
- (등급) 가급(4급상당 이상) ~ 나급(5급상당)
  - ※ 상당계급은 부단체장 직급의 차하위 계급 이하로 한정
- (분야) 정책결정의 보좌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한 보좌
- (정수) 시도 3급 이상 및 시군구 4급 이상인 경우(직위·직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법정 기구 수\*의 20% 범위 내 운영
  - \* ① 일반구를 둔 시군구의 경우 일반구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② 영 별표3 제2호 비고 1호에 따라 실·국을 감축 운영하는 인구 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기구수는 별표3 제1호의 실·국수를 적용

- ❖ 보좌기관(담당관)으로 임용 시 별도 하부조직(담당관 또는 과)을 둘 수 없으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운영
- ❖ 기타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 관련 규정·지침에 따름

## □ 운영 및 협의 절차



-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공문)\* 후 임용
  - 인사위 의결사항, 협의서식(붙임) 등 주요 증빙자료 첨부
  - 임용 후 주요 임용요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 전 퇴직 등 사유로 신규 총원하려는 경우에도 협의 필요
  - \* 임용예정 직위, 담당 직무와 통솔범위, 상당 계급, 보수 등

## VII. 추진 일정

분야	세부 내용	추진 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주민 밀착형 조직설계	10개 핵심성과지표 확정	■			
	10개 핵심지표 산출·공개			■	
	자치단체별 신규인력 성과협약 체결				■
	정원조례 반영 여부 등 점검	■			
	우수·부진 지자체 언론 등 공개	■			
	인력운용 결과 지방의회 제출				■
자율과 책임 기반 지방조직 혁신	자치단체 자체 조직 분석·진단		■		
	신규인력 특정·정밀진단 계획 확정		■		
	신규인력 특정·정밀진단 시행		■		
	수시 진단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재배치 시행계획 수립	■			
	자치단체별 효율화·재배치 시행		■		
	효율화·재배치 인센티브 시행				■
	자치단체 정원관리 실태 감사			■	
지방조직 효율성 제고	한시기구 운영 성과평가 등	■			
	위원회 정비 실적 점검		■		